

대전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19나2795 판결 [무허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0. 7. 16 선고 2019나2795 판결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5. 14 선고 2018가단2059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A

피고, 항소인C

변론 종결2020. 6. 25.

판결 선고2020. 7. 16.

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5. 14. 선고 2018가단2059 판결

주 문

1.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피고는 원고에게 80,000원 및 2018. 11. 9.부터 제4항 기재 각 점유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,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3.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4. 이 법원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.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.

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E 대 124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건물 10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건물 9m² 중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 부분 건물 6m²를 각 철거하고, 그 각 점유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주문 제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80,000원과 2018. 11. 9.부터 주문 제4항 기재 각 점유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8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가.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항 부분과 아래의 나.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각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나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"피고는 당시" 이하 부분부터 제3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피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10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9m² 중 같은 도면 표시 6, 7, 8, 9,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 6m² 부분(이하 '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'라 한다)과 L 대 469m² 토지의 일부 및 J 대 192m² 토지의 일부에 걸쳐서 허가 없이 지어져 있던 세 채의 건물(위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에 위치한 건물 부분만을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도 K으로부터 매수하고 인도받았다(한편, L 대 469m²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2017. 11. 9. '2017. 11. 6. 자. 현물출자'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).

○ 제1심판결 제3면 제6, 7행(도면 부분 제외)의 "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25m²(= 10m² + 9m² + 6m²)"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 부분 10m²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9, 10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9m², 같은 도면 표시 11, 12, 13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 6m² 부분 합계 25m²(= 10m² + 9m² + 6m²)[이하 '이 사건 토지 중 (ㄱ), (ㄴ), (ㄷ) 부분 25m²'라 한다]

○ 제1심판결 제8면 제8, 9행의 "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" 부분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이 사건 토지 중 (ㄱ), (ㄴ), (ㄷ) 부분 25m²의 2017. 11. 9.부터 2018. 11. 8.까지 1년 동안 임료가 90,120원인 사실, 그 다음날인 2018. 11. 9.부터 감정일인 2019. 2. 22. 무렵까지의 월 임료가 8,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(ㄱ), (ㄴ), (ㄷ) 부분 25m²에서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, 위치 등을 보태어 참작해 보면,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2017. 11. 9.부터 2018. 11. 8.까지 1년 동안 임료는 86,515원(= 90,120원 × 24/25, 원 미만 버림)으로, 그 다음날인 2018. 11. 9.부터

감정일인 2019. 2. 22. 무렵까지의 월 임료는 7,900원(= 8,230원 × 24/25, 원 미만 버림)으로 인정함이 상당하고, 그 이후의 월 임료는 위 7,900원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86,515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0,000원과 2018. 11. 19.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7,9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결론

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,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,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,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 제1심판결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부분(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제외)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되,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.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다.

재판장판사김매경

판사김혜령

판사박성수

별지